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60호

2024. 11. 29.(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4-241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변경)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95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4
- 삼척시 공고 제2024-1964호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

공 람									
--------	--	--	--	--	--	--	--	--	--

삼척시 고시 제2024-241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 (법률 제11062호, 2011.9.16.)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삼척시장

가. 사업명 : 지적재조사사업

나. 사업 완료지구

- 상거노1지구 : 미로면 상거노리 327-3번지 일원 242필지 424,117㎡

- 용연1지구 : 하장면 용연리 147번지 일원 164필지 1,893,790㎡

다.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해당부서 비치)

마.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33-570-3872)에 비치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

1. 기반시설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최근고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군10B	8	보조 간선 도로	3,807	소1-지412 C 하장면 어리 142-1도	하장면 용연리 산138-2임	일반 도로	용연리 마을 회관	2010. 7. 16. (삼척시고시 제48호)	용연길, 시도10호선, 계획관리지역 (2020. 6. 19., 삼척-97호)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군10B	소로2-군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선형 변경 - 연장: 3,809m → 3,807m (감 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용연1지구) 내 변동 연속지적도 반영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 2011. 9. 16.) 부칙 제2조 관련

삼척시 공고 제2024-195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0.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4. 12. 11.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최 계 0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1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하사전리 101 주1 1층, 목조, 주택, 연면적(16.52㎡)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459

삼척시 공고 제2024-1964호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삼척시장

1. 제안이유

관행적 또는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에 관한 정비 지침에 따라, 법령의 근거없이 현행 규칙상 삼척시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규칙의 정합성과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 의 일부개정

별지 제2호서식(입주자선정 통지서) <계약 시 준비사항> 중

3.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개정

3. 의견제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8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건축과
- 2) 전화 : 033-570-3454
- 3) 팩스 : 033-570-3146

4.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 / 공고 / 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삼척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2. 관계법령 별지 서식 1부.
 -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계약 시 준비사항> 중 3.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로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주자선정 통지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계약체결일	20 ~ 20		
계약장소			

귀하께서는 삼척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 1. 주민등록증
-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 3.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